

금지금 운용신탁계약서

[하나골드신탁(운용)]

위탁자와 수탁자는 아래와 같이 금지금 운용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 뒷면의 금지금 운용신탁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조항 중 달리 작성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고객)와 수탁자(은행)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illegible]

금지금 운용신탁계약서

[하나골드신탁(운용)]

위탁자 (이하 “위탁자”라 한다) 및 수탁자로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금지금 운용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위탁자가 감정·임가공 및 일부 매매계약(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에 따른 임가공 결과 완성된 금지금 중 적격금지금(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을 수탁자에게 신탁(이하 “본건 신탁”이라 한다)하고, 수탁자는 신탁된 적격금지금을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운용하는데 있다.

제 2 조(정의)

1. “감정·임가공 및 일부 매매계약”이라 함은 위탁자가 제후사업자에게 별지 2. 기재 고금 등(이하 “감정대상고금”이라 한다)의 감정을 위탁하고, 위탁자가 그 감정 결과에 동의하는 경우 위탁자가 제후사업자에게 감정대상고금을 금지금으로 임가공할 것을 의뢰하고, 위 임가공 후의 비적격금지금이 있는 경우 제후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비적격금지금을 매입하는 내용으로 위탁자와 제후사업자 사이에 체결되는 고금 등 감정·임가공 및 일부 매매계약을 말한다.
2. “고금 보관신탁계약”이라 함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감정대상고금을 신탁하는 내용으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고금 보관신탁계약을 말한다.
3.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7 제1항의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써 순도가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金)을 말한다.
4. “반환금지금”이라 함은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금지금을 제후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제후사업자로부터 반환받은 신탁금지금과 순도와 중량이 동일한 적격금지금(한국금거래소 제작)을 말한다.
5. “비적격금지금”이라 함은 임가공 후의 금지금 중 적격금지금 중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6. “소비대차계약”이라 함은 제7조에 따른 위탁자의 신탁재산 운용 지시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금지금을 제후사업자에게 대여하는 내용으로 수탁자와 제후사업자 사이에 체결되는 금지금 소비대차계약(이에 대한 변경, 수정 및 추가계약 포함)을 말한다.
7. “수익지급계좌”이라 함은 위탁자가 본건 신탁의 종료시 신탁재산에서 신탁보수, 신탁사무처리비용으로 충당하여야 할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신탁재산 중 금전을 지급받을 계좌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위탁자 명의로 개설된 아래 표상의 계좌를 말한다.

계좌개설기관	주식회사 하나은행
계좌번호	
계좌명의인	위탁자

8. “신탁금지금”이라 함은 제3조 1항에 따라 확정되는 본건 신탁의 대상인 적격금지금을 말하고 그 명세는 신탁금지금 확정일 이후 수탁자가 작성하는 별지 1. ‘신탁금지금 목록’의 기재와 같다.
9. “신탁계좌”라 함은 수탁자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제후사업자로부터 이자(연체이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로 지급받는 금전, 기타 신탁재산 중 금전을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일정 금융기관에 수탁자 명의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10. “신탁금지금 확정일”이라 함은 수탁자가 제후사업자로부터 임가공 착수통지를 수령한 날을 말한다.
11. “신탁효력발생일”이라 함은 수탁자가 제후사업자로부터 임가공 결과통지를 수령한 날을 말한다.
12. “임가공 결과통지”라 함은 감정·임가공 및 일부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후사업자가 감정대상고금의 임가공을 완료하는 경우 즉시 임가공 완료 및 임가공 결과 완성된 금지금 중 적격금지금의 품목, 수량 및 중량을

수탁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임가공 착수통지”라 함은 감정·임가공 및 일부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후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감정대상고금의 감정 결과(임가공 후 금지금 및 적격금지금의 품목, 수량 및 중량 포함), 감정대상고금에 대한 임가공 및 비적격금지금이 있는 경우) 비적격금지금에 대한 매매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수령하는 경우 즉시 수탁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14. “적격금지금”이라 함은 금지금 중 그 중량이 10g 이상, 5g 단위의 금지금을 말한다.
15. “제후사업자”라 함은 []을 말한다.

제 3 조(적격금지금의 신탁 및 수익자의 지정 등)

- ① 위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감정·임가공 및 일부 매매계약에 따른 임가공 결과 완성된 금지금 중 적격금지금을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탁한다. 본건 신탁의 대상인 적격금지금은 수탁자가 제후사업자로부터 임가공 착수통지를 수령함으로써 확정되며, 수탁자는 본건 신탁의 대상인 적격금지금이 확정되는 즉시 별지 1. 신탁대상 적격금지금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단, 위 목록 작성은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로 처리하여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 ②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금지금의 신탁은 수탁자가 제후사업자로부터 임가공 결과통지를 수령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③ 위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제후사업자에 대한 신탁금지금 반환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하며, 이로써 신탁금지금이 수탁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하여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자를 대리하여 신탁금지금 반환청구권 양도사실을 제후사업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수탁자는 본항에 따라 신탁금지금 반환청구권이 양도되는 즉시 위탁자를 대리하여 제후사업자에게 신탁금지금 반환청구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제후사업자로 하여금 수탁자로부터 신탁금지금 반환청구권 양도통지를 수령하는 즉시(늦어도 계약체결일이 속한 주의 다음주 5영업일 이내에) 별지 3. 과 같은 양식(또는 수탁자와 제후사업자 사이에 별도로 협의된 양식)의 ‘신탁금지금 반환청구권 양도승낙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또는) 수탁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탁자는 감정·임가공 및 일부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정대상고금의 감정 결과, 감정대상고금에 대한 임가공과(비적격금지금이 있는 경우) 비적격금지금에 대한 매매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제후사업자에게 표시한 경우 제후사업자로 하여금 수탁자에게 임가공 착수통지 및 임가공 결과통지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위탁자는 신탁효력발생일 현재 위탁자가 신탁금지금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고, 신탁금지금에 관하여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일체의 처분제한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및 보증하며,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수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가 부담한다.
- ⑥ 수탁자는 신탁금지금에 관하여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일체의 처분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공을 위탁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⑦ 본건 신탁의 수익자는 위탁자로 한다.

제 4 조(신탁기간)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신탁효력발생일에 개시하여 소비대차계약상 대여만기일(이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을 말한다)로부터 1영업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신탁기간 연장 및 신탁재산 재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체결되는 소비대차연장계약상 대여만기일(이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을 말한다)로부터 1영업일째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 종료일 전이라 하더라도 신탁재산이 전부 수



금지금 운용신탁계약서

[하나골드신탁(운용)]

익자에게 지급된 때에는 신탁은 종료하며, 위 종료일까지 반환금지금과 이자가 모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 날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신탁재산)

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 및 재산권으로 구성된다.

1. 신탁금지금
2. 반환금지금
3. 신탁금지금 및 반환금지금의 분실 등으로 인한 보험금
4. 신탁금지금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취득하는 일체의 권리
5. 신탁금지금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취득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신탁금지금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따라 수탁자가 취득하여 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현금, 예금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현금성 자산
6.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 수익
7. 그 밖의 위 각 호에 준하는 재산

제 6 조(신탁재산의 보관·관리)

-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신탁 사무를 처리한다.
- ③ 수탁자가 금지금 실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지금 실물을 수령한 지점의 금고에 보관하고, 금(金)과 같은 귀중품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제3항의 금지금 실물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통상적인 조치를 하되, 위 금지금의 중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추가적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비용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수탁자가 추가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추가 비용을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는 위 금지금을 인도받아 그 중량을 확인한 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 및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 7 조(신탁재산의 운용 등)

-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의 체결로써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내용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할 것을 수탁자에게 지시하며, 수탁자는 본 조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금지금의 신탁이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제후사업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신탁금지금을 제후사업자에게 대여한다.
 2. 수탁자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주, 소비대차의 목적물, 간주원금, 대여기간, 이자율, 이자계산기간, 이자지급일을 별지 4. '소비대차계약의 주요 조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정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기로 한다.
- ② 수탁자는 소비대차계약상 대여만기일 [14]영업일 전까지 별지 5-1. '신탁기간 연장 및 신탁재산 재운용 동의요청서' 양식으로 위탁자에게 신탁기간 연장 및 신탁재산 재운용 동의를 요청하고, 위탁자가 별지 5-2. '신탁기간 연장 및 신탁재산 재운용 동의서' 양식으로 이에 동의하는 경우 수탁자는 소비대차의 조건을 위탁자가 동의한 재운용조건(간주원금, 대여기간, 이자율, 이자계산기간, 이자지급일)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후사업자와 소비대차연장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제후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에서 신탁보수를 제외한 금액을 그 이자지급일로부터 [1]영업일에 수익지급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 ③ 수탁자는 소비대차계약상 반환기일이 도래한 경우(대여만기일의 도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반환기일 도래 포함) 제후사업자에게 해당 반환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고(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함),

제후사업자가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를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수단을 강구하여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선관의무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④ 수탁자는 소비대차계약상 차주인 제후사업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행사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선관의무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⑤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각종 동의, 승낙, 요구 및 청구 등 소비대차계약상 대주로서의 제 권리를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행사하기로 한다(소비대차계약상 기한의 이익 부활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선관의무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⑥ 수탁자가 제후사업자와 금지금에 대한 여러 개의 소비대차계약(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신탁받은 금지금에 대하여 체결한 소비대차계약, 수탁자가 다른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신탁받은 금지금에 대하여 체결한 소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제후사업자로부터 반환받거나 지급받은 금지금이나 금전이 위 여러 개의 소비대차계약상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각 소비대차계약상 간주원금을 기준으로 위 금지금이나 금전을 위 여러 개의 소비대차계약상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 ⑦ 수탁자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제후사업자에게 대여한 신탁금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후사업자로부터 반환금지금으로 반환받은 경우 수탁자는 제후사업자와 별지 6의 금지금 인수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⑧ 수탁자는 신탁재산 중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제후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의 매수
 3. 정부 또는 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증권(채권)의 매수
 4. 자본시장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5. 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특수채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수

제 8 조(조세 및 비용)

신탁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登記·등록 비용, 보험료 등 신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 9 조(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및 면책)

- ① 수탁자는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아래의 사항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신탁금지금 및 반환금지금 고유의 결함, 성질로 인한 손해(신탁금지금 및 반환금지금이 도품 또는 유실물인 때 피해자 또는 유실자의 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2. 국가 공권력에 의한 몰수 및 강제집행에 의한 손해
 3. 전쟁, 침략, 내전, 폭동 및 테러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
 4. 핵 연료, 핵 폐기물, 또는 핵연료의 연소로부터 배출된 방사선의 전리, 또는 그로부터 배출된 방사능에 의한 오염 등으로 인한 손해
- ② 제1항에 명시된 사유가 아니더라도 수탁자는 신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금지금 운용신탁계약서

[하나골드신탁(운용)]

제 10 조(수탁자의 사임)

-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2주일전 사전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4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제 11 조(수탁자 변경)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된다.
 1.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수탁자가 사임한 경우
-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수탁자 임무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가 신수탁자를 선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수탁자에게 신탁계약과 관련된 신탁업무에 대해 차질 없이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제 12 조(신탁계약의 해제, 해지)

- ① 위탁자가 감정·임가공 및 일부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정대상고금의 감정 결과, 감정대상고금에 대한 임가공과 (비적격금지금이 있는 경우) 비적격금지금에 대한 매매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감정·임가공 및 일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이 확정되고, 이 신탁계약은 해당 사유 발생 시점에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②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지일로부터 1영업일 전에 통지(제3항의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함)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탁재산의 보관·관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위탁자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탁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렵다고 수탁자가 판단하여 위탁자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나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이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3. 경제사정의 변화, 신탁재산의 멸실, 가치의 하락 기타 신탁의 목적 달성 또는 신탁사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제비용과 신탁보수,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위탁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거나 위탁자가 지급을 거절할 경우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제 13 조(신탁종료시의 신탁재산의 반환 등)

- ① 신탁계약에 따른 본건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제12조에 의하여 본건 신탁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2. 본건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탁자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제후사업자에게 대여한 신탁금지금 전부를 제후사업자로부터 반환금지금으로 반환받고, 제후사업자로부터 소비대차계약상 이자를 모두 지급받은 경우
 4.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5. 신탁기간 종료일 전에 신탁재산이 전부 수익자에게 지급된 때
 6. 기타 신탁법 등 신탁관계법규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본건 신탁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한다.

1. 제3조 제3항에 따라 제후사업자로부터 신탁금지금 반환청구권 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기 전인 경우(위탁자로부터 신탁금지금을 인도받지 아니한 상황임): 신탁재산이 있다면, 해당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한다.
2. 제3조 제3항에 따라 제후사업자로부터 신탁금지금 반환청구권 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은 이후인 경우: 수탁자는 제후사업자에 대한 신탁금지금의 반환청구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신탁금지금을 반환하기로 하며, 별지 7. '금지금 반환청구권 양도 통지'와 같은 양식으로 반환청구권 양도 사실을 제후사업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 ③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에 본건 신탁이 종료된 경우(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건 신탁이 종료된 경우 포함) 수탁자는 신탁재산에서 신탁보수, 신탁사무 처리비용으로 충당하여야 할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신탁재산을 신탁재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 같이 처리한다.
 1. 금지금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본건 신탁의 종료 사실 및 신탁재산 중 금지금을 반환받을 장소를 통지한다. 위탁자가 위 장소에 방문하여 신탁재산 중 금지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 금지금을 위탁자에게 반환한다. 본항에 따라 신탁재산 중 금지금을 위탁자에게 교부한 경우 수탁자와 위탁자는 별지 8. 양식의 '금지금 반환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 금전의 경우: 수탁자는 제1호에 따라 금지금을 지급한 날에 신탁재산 중 금전을 수익지급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3. 본건 신탁의 종료 당시 수탁자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제후사업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 위 채권을 현상 그대로 위탁자에게 이전한다.
- ④ 수탁자는 신탁금지금의 일부를 제후사업자로부터 반환금지금으로 반환받거나, 제후사업자로부터 소비대차계약상 이자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신탁보수, 신탁사무처리비용으로 충당하여야 할 재산을 제외한 반환금지금 및 금전을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 ⑤ 제3항 제1호 또는 제4항에 따라 반환되는 금지금은 수탁자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제후사업자로부터 반환받은 반환금지금(한국국거래소가 제조한 골드바)이며, 이는 신탁금지금이 다른 제조사에서 제작한 골드바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의 체결로써 이에 동의한다.
- ⑥ 수탁자가 제3항 제1호 또는 제4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매도인으로서 위탁자와 매수인으로서 제3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 금지금을 위 제3자에게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 수탁자는 위 금지금을 위 제3자에게 교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는 제3항 제1호 또는 제4항 따른 반환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 14 조(신탁보수)

- ① 신탁보수는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 그 금액은 아래 제1호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신탁기간 연장 및 신탁재산 재운용에 동의하여 소비대차연장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연장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제2호 산식에 따라 계산된 신탁보수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소비대차계약 체결시 신탁보수

$$[\text{신탁보수}] = [\text{소비대차계약상 간주원금}] \times [\text{신탁보수율}] \times \{[\text{소비대차계약상 대여기간의 일수(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 \{365(\text{윤년인 경우 } 366)}\} \text{ 위 "신탁보수율"은 } [*]\% \text{를 의미한다.}$$
 2. 각 소비대차연장계약 체결시 신탁보수

$$[\text{신탁보수}] = [\text{소비대차연장계약상 간주원금}] \times [\text{신탁보수율}] \times \{[\text{소비대차연장계약상 대여연장기간의 일수(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 \{365(\text{윤년인 경우 } 366)}\} \text{ 위 "신탁보수율"은 } [*]\% \text{를 의미한다.}$$
- ② 신탁보수의 지급기일은 본건 신탁의 종료일로 한다(단,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신탁기간 연장 및 신탁재산 재운용에 동의하여 소비대차연장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신탁보수의 지급기일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소비대차계약상 이자에서 해당 신탁보수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날로 한다). 수탁자는 신탁보수를 그 지급기일에 신탁재산 중 금전으로부터 지급



금지금 운용신탁계약서 [하나골드신탁(운용)]

받기로 하며, 신탁재산 중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15 조(소송수행)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소 제기 및 소송진행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소송과 관련된 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다)은 제8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 16 조(비밀유지의무)

- 위탁자 및 수탁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없이 신탁계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및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3자(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각 당사자의 자문기관을 제외한다)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정보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정보
 - 관련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

제 17 조(신탁사무의 위임)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사무 중 일정 업무를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에 따른 신탁사무 위임과 관련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비용 및 보수를 신탁사무처리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18 조(통지방법)

- 수탁자는 신탁계약상 발송이 요구되는 위탁자에 대한 통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한다.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고지한 주소로 등기우편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고지한 팩시밀리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고지한 전자우편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고지한 모바일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 신탁계약, 감정·임가공 및 일부 매매계약 및 소비대차계약 등과 관련된 수탁자와 제후사업자 간의 통지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통신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 19 조(준거법)

-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위탁자 및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신탁계약의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해석되어야 하며,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신탁감독기관의 관련 지침과 지도, 관련 법령의 개폐 등에 부합하도록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제 20 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위탁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위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신탁계약이 체결된 증거로서 이 신탁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가 1부씩 보관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통장을 교부함으로써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위탁자 겸 수익자

[별지 1] 신탁금지금 목록

번호	품목	순도	중량(g)
1			

[별지 2] 감정대상고금 목록

번호	품목	수량(개)	중량(g)	고금보관신탁계약상 해당 보안봉투식별번호
1				

[별지 3] 금지금 반환청구권 양도 승낙서

금지금 반환청구권 양도 승낙서

수신 : [] (이하 “위탁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수탁자”)

1. 이 반환청구권 양도 통지는 위탁자와 당사 사이에 체결된 고금 등 감정·임가공 및 일부 매매계약에 따라 일정 고금[주식회사 하나은행이 당사에 교부한 고금(20____년____월____일자 보안봉투 인수인계서상 보안봉투(아래 표 기재)에 수납된 고금)을 의미함]을 임가공한 후의 금지금 중 그 중량이 10g 이상, 5g 단위의 금지금(아래 표 기재)이하 “본건 금지금”)의 반환청구권과 관련됩니다.

- 보안봉투 관련 사항

번호	보안봉투 식별번호	인수인계 시각
1		

- 본건 금지금 관련 사항

번호	품목	순도	중량(g)
1			

2. 당사는 본건 금지금을 보관하고 있는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금지금 운용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당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본건 금지금의 반환청구권을 20____년____월____일자로 수탁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20____년____월____일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
[] (인)

[별지 4] 소비대차계약의 주요 조건

소비대차계약의 주요 조건

- 차주 :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
- 소비대차의 목적물 : 신탁금지금([]g)
- 간주원금 : 차주가 대여실행일에 대주(수탁자)에게 최초로 고시(고지)한 금시세를 기준으로 신탁금지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
- 대여실행일 :
- 대여만기일 :
- 이자계산기간 : 대여실행일(당일을 포함한다)로부터 대여만기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을 말하고, 당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까지의 기간
- 이자율 : []%
- 연체이자율 :
- 이자지급일 :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



금지금 운용신탁계약서

[하나골드신탁(운용)]

* 이 주요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소비대차계약에서 정의되어 있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짐.

[별지 5-1] 신탁기간 연장 및 신탁재산 재운용 동의 요청서

신탁기간 연장 및 신탁재산 재운용 동의 요청서

수신 : []

- 이 동의요청서는 위탁자로서 귀하와 수탁자로서 당행 사이에 20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된 금지금 운용신탁계약(이하 “본건 신탁계약”)과 관련됩니다.
 - 본건 신탁계약에 따라 당행이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이하 “제휴사업자”)과 기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의 만기일이 20____년 ____월 ____일자로 도래하는바, 당행이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제휴사업자에게 대여한 금지금 전부를 당행이 제휴사업자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소비대차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기간을 연장하고 소비대차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과 이러한 신탁재산 재운용에 따라 신탁기간이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상 대여만기일(이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을 말한다)로부터 1영업일째 되는 날로 연장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 차주 :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
 - 나. 소비대차의 목적물 : 금지금([]g)
 - 다. 간주원금 : 차주가 대여연장일에 대주(수탁자)에게 최초로 고시(고지)한 금 시세를 기준으로 신탁금지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
 - 라. 대여연장일 :
 - 마. 대여만기일 :
 - 바. 이자계산기간 : 대여연장일(당일을 포함한다)로부터 대여만기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을 말하고, 당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까지의 기간
 - 사. 이자율 : []%
 - 아. 연체이자율 :
 - 자. 이자계산기간 : 대여연장일(당일을 포함한다)로부터 대여만기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을 말하고, 당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까지의 기간
 - 차. 이자지급일 :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
- * 이 동의요청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소비대차계약에서 정의되어 있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짐.

20____년 ____월 ____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____ 지점 (인)

[별지 5-2] 신탁기간 연장 및 신탁재산 재운용 동의서

신탁기간 연장 및 신탁재산 재운용 동의서

수신 : 주식회사 하나은행

- 이 동의서는 위탁자로서 본인과 수탁자로서 귀행 사이에 20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된 금지금 운용신탁계약(이하 “본건 신탁계약”) 및 귀행의 20____년 ____월 ____일 자 신탁기간 연장 및 신탁재산 재운용 동의요청서(이하 “본건 동의요청서”)와 관련됩니다.
- 본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 본인은 본건 동의요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신탁재산을 재운용하고 신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 (서명/인)

[별지 6] 금지금 인수 확인서

금지금 인수 목록

번호	품목(순도)	수량(개)	중량(g)	비고
1				

인계자 및 인수자는 상기 금지금을 정히 인계·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인계자 _____ 인수자 _____
소비대차 차주 _____ 소비대차 대주 _____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 _____ 주식회사 하나은행 _____ 지점
지정 물류사업자 [] 직원명 _____ (서명/인)
대리인 _____ (서명/인)

[별지 7] 금지금 반환 청구권 양도 통지

금지금 반환 청구권 양도 통지

수신 :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

- 이 반환청구권 양도 통지는 _____(이하 “위탁자”)의 귀사에 대한 20____년 ____월 ____일자 금지금 반환청구 양도 통지에 기재된 금지금(이하 “본건 금지금”, 위 양도 통지에 기재된 보안봉투 관련 사항 및 본건 금지금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음)의 반환청구권과 관련됩니다.
 - 보안봉투 관련 사항

번호	보안봉투 식별번호	인수인계 시각
1		

- 본건 금지금 관련 사항

번호	품목	순도	중량(g)
1			

- 위탁자와 수탁자로서 당행 사이에 본건 금지금에 관하여 체결된 금지금 운용신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당행은 당행이 귀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본건 금지금의 반환청구권을 20____년 ____월 ____일자로 위탁자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____ 지점(인)

[별지 8] 금지금 반환 확인서

금지금 반환 목록

번호	품목(순도)	수량(개)	중량(g)	비고
1				

인계자 및 인수자는 상기 금지금을 정히 인계·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인계자 _____ 인수자 _____
수탁자 _____ 위탁자 [] (서명/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_____ 지점(인)
직원명 _____ (서명/인)

